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부가가치세 26일까지 납부... 집합금지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84만명, 법인사업자 108만개가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도 고지세액을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 43.8만명에게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9월 30일까지).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 예상되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1.9만명은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제공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107만명이다.

2023년부터 연 매출 27조 넘이면 디지털세 과세...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2회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도입 방안에 대한 130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으로 배분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들이 시장 규모가 큰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 SK하이닉

스도 이익률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배분 방식은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식이다. 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된다.

정부는 필라1디지털세에 대해선 제도 도입시 그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 비밀계좌' 이전 못 숨긴다... 국세청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7일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황을 맞이한 주식과 부동산에서 번 돈이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검증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팔 등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감금이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포착하고 관련 검증에 나섰다.

한국 국세청만이 아니라 주요국들 역시 같은 협정 등을 통해 각국의 계좌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그간 비밀계좌나 페이퍼컴퍼니로 유명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탈세와 조세회피가 국가 재정을 흔들만큼 큰 위협이 되자 각국이 국경 칸막이를 걷고 탈세방지를 위한 공조와 공유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제 더 이상 역외에 자금을 은닉하여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전자결제대행사를 거치는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